# 안전보건관리규정[목차로]

제정 2020. 03. 10.

개정 2020. 12. 24.

전부개정 2021. 09. 13.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시설물·발주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진흥원 시설 이용자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진흥원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진흥원의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복무규정, 단체 협약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중대재해" 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상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라.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한 국가적 질병
-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6.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 7. "위험성평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 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8. "안전작업허가" 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 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보건부서 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전기 취급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 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3. "관계수급인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정 비·보수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 1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16. "사고" 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 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 17. "안전관리" 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18. "보건관리" 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업장(사무실 등)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19.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립 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 20. "안전경영책임보고서"란 안전관리 지침 제6조의1에 따라 공공기 관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진흥원의 부원장을 말한다.
- 22. "안전보건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부서장을 말

한다.

- 23. "안전보건담당관"란 안전보건전담부서에서 건물의 안전 및 보건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24. "관리감독자" 란 진흥원 본원 및 분원건물의 관리소장을 말한다.
- 25. "안전보건실무자" 란 사업장의 전기, 기계, 보안 등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각 사업장의 파트장, 책임, 사원을 말하며, 관리감 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26. "안전보건부서" 란 진흥원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안전경영방침) ① 원장은 진흥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과 근로자 대표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진흥원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진흥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제5조(준수 의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진흥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②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원장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원장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수급업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급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2장 안전 · 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제7조(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관, 관리감독자로 구성하며 전기·소방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실무자를 둘 수 있으며 안전보건조직체계는 [별표 1호]와 같다.
  - ② 원장은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 · 보건조직의 지휘 · 감독
- 3.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ㆍ공시
- 4.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안전보건책임자 등)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터 위임 받은 안전보건 관리업무 총괄
- 2.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담당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물별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2.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및 협조
  - 3. 안전 ·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건물 시설물 점검 및 유지 확인 및 지원
-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실무자는 안전보건책임자가 작업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지원
  - 2. 전기·소방·기계 등 개별 전문분야의 업무
  - 3.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단, 작업감독자 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 5. 그 밖의 해당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사업장에서 건물·시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사업장별 소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 2. 그 밖의 진흥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 2.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 ⑥ 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 3. 그 밖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③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 ⑥ 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지침 제14조의 안전 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14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원장은 안전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과 관

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진흥원 또는 관계수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수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3.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가스·전기·승 강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1.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2.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3.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 제18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 제19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업무인수인계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에는 건물 및 시설 등의 작업 순서,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시설의 작업유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 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은 다음과 같다.
  -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

획에 따른다.

-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1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실시 기록·보존)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담당자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23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공시) ① 원장은 매년 12 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안 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은 안전관리지침 제6조 및 제6조의 1을 따른다.
- 제2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 제25조(안전검사) ① 원장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원장은 유해·위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 ·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2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원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원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원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제28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⑤ 진흥원 사업·시설에 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원 또는 수급인에게 직접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과수급인은 현장을 확인하여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행해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원장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 6, 7, 8, 9를 따른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 제30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원장은 근로자 및 진흥원 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주기 및 방법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③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④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 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등) ① 원장은 시설공사, 정비·보수 등 작업장 내 고소·화기·정전·중장비·굴착·방사선·밀폐작업 등 사고 의 우려가 높은 유해·위험작업 등을 작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발부하여

- 야 한다. 다만, 건물별 안전보건담당자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발부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직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별표 제2호]와 같이 정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직원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2조(비상조치계획)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하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5. 비상시 대피절차
    -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 9. 비상대피 후의 전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비상조치계획은 진흥원의 재난·방재 등 조치계획과 준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33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 제34(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진흥원원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35조(작업환경측정) ①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방법・횟수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 3. 수시건강진단
  - 4. 임시건강진단
  - ② 원장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3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 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 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 제38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원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원장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원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원장은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안전·보건에 저해함이 없어야 한다.
  -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원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상화학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4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2. 유해성 · 위험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제41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원장은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해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원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 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2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원장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

- "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3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원장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원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220조 내지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원장은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및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 조합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46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안전보건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책임자는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⑤ 안전보건책임자는 원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 제4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다.
  - ② 안전보건책임자는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④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재해발생 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은 법에 의한 산업재해 중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의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에 한한다.
- 제48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관리) ① 원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서식 30호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노동조합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 ③ 원장은 중대재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④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④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다.

####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제4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원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0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원장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법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한다.
  -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1조(위험성평가 교육) 원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진흥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52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53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진흥원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와 같다.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 제54조(안전보건 제안제도 등) ① 원장은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시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고 임직원의 제안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으로 인한 아차사고를 찾아내고 발생원인을 예방하는 아차사고 발굴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아차사고 발굴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5조(포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진흥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또는 아차사고 발굴 건이 채택된 자
  - 2.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②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56조(징계) ①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역시키 자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진흥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 제57조(문서보존연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발생기록
  -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9.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제1항의 자료는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8조(변경절차)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진흥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9조(행사장안전관리) ① 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국내·외 행사 추진 시 담당부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 행사준비에 참 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강화 준수 이행
  - 2. 고소・화기 작업 등을 수반하는 행사에 관한 안전계획 수립
  - 3. 안전이행서약서 포함 표준용역계약서 작성
  - 4.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이행
- 제60조(준수) ①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부 칙(2020.3.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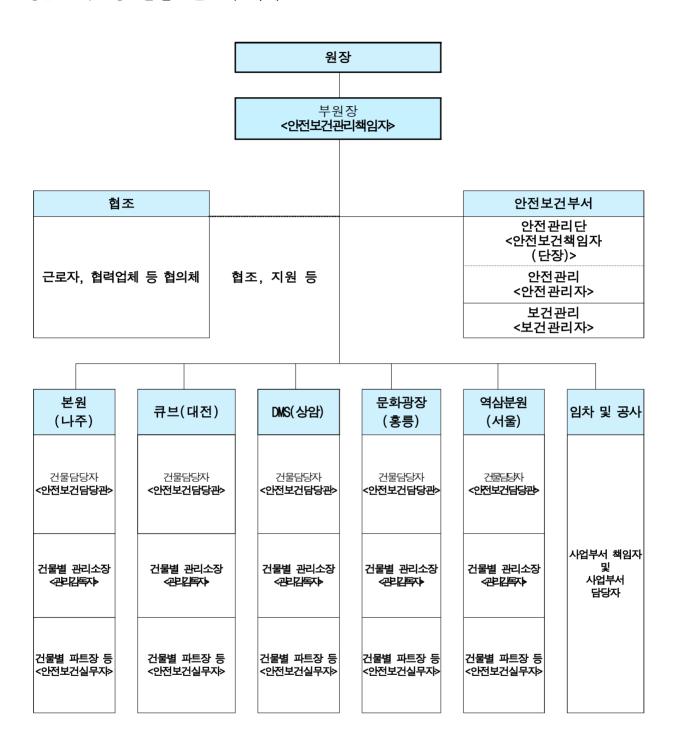
## 부 칙(2020.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9.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안전보건조직 체계



# 단독금지 작업의 분류표

No	작업명	2인 1조 작업	신규직원 단독작업 금지	비고 (안전작업허가)
1	고소작업(대)	0	0	0
2	화기작업(용접)	0	0	0
3	정전작업	0	0	0
4	중장비작업	0	0	0
5	굴착작업	0	0	0
6	방사선작업	0	0	0
7	밀폐공간작업	0	0	0
8	건물외벽 청소 (고소작업)	0	0	0
9	이상기후 외부 작업 (폭염, 한파 등)	0	0	_
10	중량물(인력운반) 취급 작업	0	-	-
11	조경작업(예초기)	_	0	-
12	유해물질 취급작업	-	0	-

## <u>안전보건 교육일지</u>

			교육일	자: 20		작성자	: [소속] [이름]		
교육과정	나. 채용 시의 다. 직업내용 t 라. 특별인전보 마. 직무교육 [	가. 정기교육 ☑   나. 채용 시의 교육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   마. 직무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바. 그 밖의 교육(개인별교육, )							
교육인원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참석자 수		교육 미참석	자 수	교육 미참석 사유		
교육과목	<간략히>								
교육내용		< <u>간</u> 략하/>							
교육강사	직책	성명		<u>-</u>	교육장소		교육시간		
및 장소									
특이사항									
교육 훈련	가. 교육훈련 효과성 파악 방법 ①질의 응답☑ ②보고서□ ③전달 교육□ ④시험□ ⑤기 타( )								
효과성	나. 교육훈련 ①양 호☑		파악 결과 ] ③효과 없음[						
교육사진	<1	l진설명 2	발략하>		<사진설당	명 간략히.	>		

# <u>안전작업 허가서</u>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지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7.87	전화번호(휴대폰)					
		·				
	계약명	계약기	간			
계약	계약금액	수행칙	백임자			
개요						
	작업종류 고소작업 / 화기작업 / 정전작	업 / 중장비작업	/ 굴착작업 / 빙	사선작업 /	밀폐작업 / 기	旧
	작업내용					
공사	작업방법					
작업	작업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실 일	시까지	
	작업장소					
허가조건						
사전 작업현장 안?	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사작업 안	전의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	원 해당부서의 장 승인자					
					(서명 또는	인)

# 작업중지 요청서

	담 당	부서장
결재		

사용중지대상	
보완 대책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Tel
위와 같이 작업중	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	<b>나고</b> 발생부서										
2. /	<b>나고일시</b>										
3. /	<b>나고장소</b>										
4. /	사고내용		[발생원 [주요내	인(추정)  용]:	)]:						
	사고관련 기재내용	3									
1	인명사고										
	부서명	2	l 급	성'	명	연령	성 별	생년	년월일 -	비고	
2	재산피해										
	재산구분			피해물품명	별		주요피해내용			비고	
	진흥원/민2	<u>'</u>									
6.	조치사항		<u>'</u>						1		
	<b></b>  요 시 , 사진 참	부)	•								
7.	사후대책 등										
									년	월	일
					작성지	ŀ				(서명 :	또는 인)
										\ 10 -	— L L)

#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소 속 (또는 주소)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진 술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성	실히 기술)		
위 진술 내용	과 틀림없음.						
			년 월	일			
	Ç	기 진술인			(인)		

# <u>사 고 조 사 보 고 서</u>

1. 사고부서	4								
2. 사고일시	4								
3. 사고장소	Ŀ								
4. 사고종류	₹	**사망/부상	<i>, 사고</i>	유형(골절/동상/	/부종/일	<u> 펠림/절단 등</u> ) 당	<b>ヺ</b> 人/		
5. 사고내용	3								
6. 조사자	정보								
구분	Ė	소속		직 급		성명		비고	]
7. 사고분식 (원인 등									
8. 사고재빌 방지대최									
9. 기 트	<b></b>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	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